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1995년 6월 30일

대통령 김영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 ① 도지사 또는 군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당해 전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을 위한 중간적환시설
 2. 분리배출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집하·선별 및 비축을 위한 시설
 3.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 또는 사료화를 위한 시설
 4. 대형 폐기구·폐기전제품등 대형폐기물의 압축 또는 파쇄를 위한 시설
 5.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기연성폐기물의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6. 유해성폐기물을 고형화·안정화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간처리시설(도건설종합계획에 한한다)
 7.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 및 면적

다. 시설의 설치시기 및 설치주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노동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노동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이 노동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3 조 (공단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이상인 공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으로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톤이상인 공장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단지 · 공장의 경우

가.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나.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

2. 관광지 · 관광단지의 경우

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나.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다.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업단지 · 공장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외의 장소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단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공단등의 조성사업의 명칭 · 위치 및 면적(위치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면을 첨부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단등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 규모 : 설치방법 및 설치 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단등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 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제 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 함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말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

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로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을 곱한 금액

2.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 군 또는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액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의 설치에 당해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

다.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촉진

제 5 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 6 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7 조 (입지타당성조사의 공개)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때에는 동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관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

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이상의 자가 그 지역안에 입지선정계획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타당성조사를 그 지역과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인접지역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이상 지역주민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는 조사결과의 개요를 관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후 15일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8 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9 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

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위치도를 첨부한다.)
3. 사업비 소요금액 및 그 자금의 조달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4. 당해지역의 토지 · 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 ·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제 10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 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결정 · 고시되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자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 고시 일자
3.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적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축적 5천분의 1이상의 국토이용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적 1천200분의 1의 지적도 (임야의 경우에는 축적 6천분의 1의 임야도)

제 11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2.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건축물의 건축
3. 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공작물의 설치
- ②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약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

2.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5톤미만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 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제외한다.)

제 12조 (시설부지주민의 생활기반시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 고시일 현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1년이상 거주한 자
2.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3년이상 거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1세대당 8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생활안정지원금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6월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13조 (시설의 준공인가)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준공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내역(시설물의 배치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준공사진을 포함한 준공도서 및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첨부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차수 및 공사완료일
-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
 2. 준공인가연월일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의 공고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
2. 준공인가의 공고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내역
3. 준공인가의 공고전 사용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 검토의견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 14 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고시가 있는 후에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제 15 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을 위한 의견의 수렴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별로 각 시·군 또는 구의회에서 선정한 당해 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 또는 동별 주민대표 1인 내지 2인
2.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당해 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 또는 동별 주민대표 1인 내지 2인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 또는 동의 주민중 덕망과 학식을 갖춘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0일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완료된 즉시 그 결과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에게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6 조 (환경상 영향기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상 영향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직업영향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영향(당해 시설의 규모, 지형적 여건, 기상여건 및 지역주민상황등을 감안하여야 한다.)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임산물 및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의 지역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당해 시설의 규모, 지형적 여건, 기상여건 및 지역주민상황등을 감안하여야 한다.)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외의 지역.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7 조 (직접영향권 지역의 토지매수등) ① 법 제 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소를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성명·주소
2. 매수청구대상토지의 위치·면적(본인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제 18 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제 19 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 20 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21 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① 법 제21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0내에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자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반입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 22 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 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 23 조 (주변영향지역지원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별표 2의 지원사업의 종류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를 주민 또는 가구별로 지원하도록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접영향권안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1. 건축물·토지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1년이상 거주

한자

2. 세입자·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계획 결정·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3년이 상거주한 자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지역 주민중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각 시·군 또는 구의회에서 주변영향지역에 해당되는 읍·면 또는 동별로 각각 1인을 선정(해당 읍·면 또는 동이 1개소인 경우에는 주민 3인이내, 2개소인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별로 각각 주민 2인이내)

2.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변영향지역에 해당되는 읍·면 또는 동별로 각각 1인을 선정(해당 읍·면 또는 동이 1개소인 경우에는 주민 3인이내, 2개소인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별로 각각 주민 2인이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 24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 25조 (하등급의 제한) 법 제24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정"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제 2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로서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중에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연구 기관을 선정하여 그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후 30일이내에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해당지역주민이 30일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 27조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5.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6.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제 28조 (권한·업무의 위임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자
4.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미 설립 또는 조성중인 공단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조성중

인 공단등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공업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자
 2.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고자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8만제곱미터이상인 자
 3.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자
- (별표생략)

그린라운드와 산업체의 대응 방안 워크샵 개최

대한화학회와 한국분석과학회는 아시아 지역의 화학자와 환경학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8월 21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 분석과학회(Asianalysis III) 기간중
 “그린라운드와 산업체의 대응 방안”이란 제목으로 워크샵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1995. 8. 21 오전 11시~오후 6시

■ 장 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 주 죄 : 대한화학회·한국분석과학회

■ 주 관 : 서울환경컨설팅

■ 후 원 : 환경보전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 문의처 : 서울환경컨설팅 Tel. 725-8531